

#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 확대

- 환경부 -

**환** 정부는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sub>2</sub>) 등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대상지역내 업무용 보일러, 아파트단지의 중앙난방용 보일러 및 신규 발전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저황경유를 사용토록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96. 12. 21)하였다. 이 고시에 의하면 '97. 9. 1일부터는 서울의 경우 평균전용면적이 12.1평을 초과하는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단지와 부산·대구·인천 및 경기도 일부 도시(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등 13개시) 지역에서는 평균 전용면적이 18평을 초과하는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저황경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오는 '98. 9. 1일부터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을 광주·대전 등 광역시와 경기도 평택·오산·용인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전라남도 여천·광양·여수시, 경상남도 울산·양산·진해·마산·창원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 지역내 0.5톤이상 업무용 보일러 및 25평 이상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저황경유를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오는 '99. 9. 1일부터는 상가지역의 0.2톤이상 0.5톤미만 업무용 보일러 및 18평이상 25평미만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저황경유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지역을 전라북도 전주·군산·익산시 및 경상북도 구미·포항시지역으로 확대하고, 동 지역내 0.5톤이상 업무용 보일러 및 25평이상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저황경유를 사용토록 하였다.

오는 2000. 9. 1일부터는 전라북도 전주·군산·익산시 및 경상북도 구미·포항시 지역의 0.2톤이상 0.5톤미만의 업무용 보일러 및 18평이상 25평미만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청정연료 또는 저황경유를 사용토록 하였다.

한편, 환경부는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지역내의 신규 발전소는 LNG 복합화력발전소에 한하여 발전소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유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일러의 내용연수(10년)이내까지는 중유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전소 및 소각장 폐열 등의 재활용율을 높여 대기질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발전소 폐열이나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여 전

체 난방열의 85%이상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0.3%이하 저황중유를 사용토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고시가 시행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과다한 B-C유를 사용하던 난방용 보일러에서 LNG, LPG 및 저황중유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내의 대기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 청정연료 등의 사용지역 확대

### ● 대상지역

기      준	→	변      경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경기도(13개시)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u>광주, 대전</u> 경기도 (16개시 : 평택 · 오산 · 용인 등) 충 북 (1개시 : 청주) 충 남 (1개시 : 계룡) 전 북 (3개시 : 전주 · 군산 · 익산) 전 남 (3개시 : 여천 · 여수 · 광양) 경 북 (2개시 : 포항 · 구미) 경 남 (5개시 : 울산 · 창원 · 마산 · 진해 · 양산) (서울 등 6개 광역시, 31개시)
(서울 등 4개 광역시, 13개시)		

### ● 대상시설

- 업무용보일러 : 0.2톤이상
- 아파트단지 : 18평이상
- ※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지역내 신규 발전시설에 대하여 LNG 또는 경유 사용을 의무화
- ※ '98~2000년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 사용연료 : 청정연료 또는 경유

# 석유 동향 지표

## 11월중 석유지표

(단위 : 천배럴)

	1995		1996		증 감 (%·%P)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원 유 도 입	57,569	569,007	66,905	649,959	16.22	14.23
(단가, \$)	15.46	16.51	22.29	18.84	44.20	14.07
(원유대, 천\$)	889,815	9,396,993	1,491,189	12,244,654	67.58	30.30
원 유 처 리	55,330	574,446	65,920	647,501	19.14	12.72
(가동률, %)	101.45	98.05	90.13	93.89	-11.32	-4.16
제 품 생 산	57,045	586,645	66,233	652,959	16.11	11.30
제 품 소 비	65,792	603,386	62,100	641,062	-5.61	6.24

〈주〉 단가, 원유대는 FOB기준

## 지역별 원유도입

(단위 : 천배럴)

	1995		1996		증 감 (%)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중 동	48,705	441,977	50,404	505,742	3.49	14.43
동 남 아	5,784	65,081	9,306	80,554	60.90	23.78
미 주	2,064	18,456	3,911	21,509	89.46	16.54
유럽·아프리카	338	38,548	2,027	36,960	500.04	-4.12
오세아니아	679	4,944	1,257	5,194	85.07	5.06
계	57,569	569,007	66,905	649,959	16.22	14.23

## 석유제품 수급

(단위 : 천배럴)

	생 산		소 비		생 산 증 감 (%)		소 비 증 감 (%)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휘 발 유	6,480	65,212	4,950	61,338	11.24	19.73	-14.15	13.82
등 유	4,806	43,252	8,363	58,925	11.28	14.19	0.35	15.60
경 유	20,091	194,619	13,455	154,865	25.91	18.46	-18.68	6.83
B-C 유	19,091	188,052	13,893	146,109	9.42	-0.04	-3.45	-0.86
나 프 타	8,997	92,439	11,694	128,022	15.04	15.59	2.35	7.68
프 로 판	505	4,820	4,715	42,100	31.85	21.26	2.32	3.25
부 탄	535	10,040	1,775	19,088	-39.82	-6.20	5.09	4.06
아스팔트	1,397	10,694	1,239	9,362	11.05	13.51	8.49	12.13
기 타	4,331	43,831	2,016	21,253	37.67	15.93	6.61	7.19
계	66,233	652,959	62,100	641,062	16.11	11.30	-5.61	6.24

〈주〉 제품소비는 내수기준

## 석유제품 수출입

(단위 : 천배럴, 천달러)

	수 입		수 출		수 입 증 감 (%)		수 출 증 감 (%)	
	11	1-11	11	1-11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물 량	21,570	209,399	19,405	183,552	-8.50	6.32	44.29	24.93
금 액	534,729	4,595,640	484,917	4,122,411	14.95	19.47	87.37	51.44

〈주〉 수출은 국제빙커링 및 미군납 포함